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비용 지원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63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비용 지원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 6.
3. 회 부 일: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보험 의무 가입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동·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상 등의 위험이 더 큼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체육시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

Ⅲ. 검토의견

1.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비용 일부 지원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u>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후단 신설></u>	제26조(보험 가입) ----- ----- ----- ----- -----, <u><단서 삭제>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다. 검토의견

- 현행법령상 체육도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

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또는 시설 내 피해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¹⁾²⁾).

- 그런데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자연령증이 주로 사용하는 등 부상 위험이 적지 않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해배상에 따른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2023년 기준 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은 2,963개소이며, 2024년 기준 보험 가입 의무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건수는 2,531건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 >

연도	2021	2022	2023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 수(단위: 개소)	2,709	2,777	2,963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30조제8호), 등록취소등(법 제32조제2항제6호), 과태료(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 조치 관련 현황 자료 없음

< 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주계약·특약 가입) 현황 >

기간	가입건수(건)	보험료(천원)	지급건수(건)	지급금액(천원)
2022. 1~12월	2,069	18,218,859	3,711	9,657,134
2023. 1~12월	2,250	20,917,097	4,311	11,208,336
2024. 1~12월	2,531	22,206,995	4,597	10,070,898

자료: 손해보험협회

-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게도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 때,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현행법에 따라 시정명령(법 제30조제6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영업폐쇄명령·영업정지명령(법 제32조제2항), 영업폐쇄명령·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8조제2항제3호)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첫째,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단서 삭제)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새로 발생할 소규모 체육시설은 2024년 기준 64,227개소(전체 등록·신고체육시설 67,205개소 중 95.6%)³⁾이고 2024년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들의 보험 가입 건수가 합계 73,003건⁴⁾임을 고려할 때 이미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 중임.
- 둘째,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 지원(후단 신설)과 관련하여, ① 64,227개소에 해당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 경우 예산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⁵⁾, ② 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 민간사업자에 대해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⁶⁾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와 그 외의 체육시설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3) [참고자료1] 체육시설업 현황 및 관련 규제

4)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주계약·특약 가입) 현황 >

	기간	가입건수(건)	보험료(천원)	지급건수(건)	지급금액(천원)
계	2022. 1~12월	58,164	9,806,112	1,819	4,881,038
	2023. 1~12월	66,505	10,693,556	2,505	6,165,747
	2024. 1~12월	73,003	11,223,019	2,989	6,893,493
주계약	2022. 1~12월	8,529	3,715,318	912	2,140,508
	2023. 1~12월	9,678	4,190,344	1,078	2,641,292
	2024. 1~12월	10,775	4,508,121	1,278	2,732,298
특약	2022. 1~12월	49,635	6,090,793	907	2,740,530
	2023. 1~12월	56,827	6,503,212	1,427	3,524,455
	2024. 1~12월	62,228	6,714,898	1,711	4,161,194

자료: 손해보험협회

5)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소규모 체육시설이지만 자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주보험 및 특약 형태로 가입하여 112억 23백만원의 보험료 납부를 확인함. 다만,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료 차이점을 고려하여 주계약 수준으로 보험료를 상향하여 보험료 단가로 상향(3.7배 규모)될 시 188억원 규모가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 수의 확대 추이(‘22년: 60,644개소→‘23년: 64,378개소→‘24년: 67,205개소)에 따라 지원 예산은 지속 확대될 것임.”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5.5.21.)

6) < 보험 가입 의무 관련 유사 입법례 >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실익, 예산 소요,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및 기존 가입자의 역선택(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안 대신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자발적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⁷⁾⁸⁾

입법례	내용	제재(과태료)	비용지원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13조의2제1항)	100만원 이하 (제25조제1항제6호의2)	없음
학원법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제4조제3항)	300만 원 이하 (제23조제1항제1호)	없음
청소년활동법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등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제25조)	300만 원 이하 (제72조제2항제10호)	없음
어린이놀이시설법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안전검사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제21조)	500만 원 이하 (제31조제1항제5호)	없음

7) <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

현 행	개 정 안	문체부 수정안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신설>	제26조(보험 가입) ----- ----- ----- ----- ----- ----- - <단서 삭제>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보험 가입) ① ----- ----- ----- ----- ----- ----- ----.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을 가입한 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 >

- 기획재정부: 보험료는 각 시설 주체 부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부가 생계형, 취약계층 등에 한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며,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인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업의 대다수(95%)로 재정소요 과다가 우려되는바, 신중검토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5

○ 경기도 양주시: 현재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가입비 신청 및 지급 등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바, 수정이 필요함

[참고자료1] 체육시설업 현황 및 관련 규제

○ 체육시설업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업	신고업
(3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	(17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 체육도장업(7종) :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법 제10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6조 [별표2], 시행규칙 제6조)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민간 체육시설) : 67,205개소(2024년 기준)

총계(개소)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계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67,205	549	530	14	5	66,656

- 신고체육시설업 총 66,656개소(2024년 기준) *  : 소규모 체육시설업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합계	66,656	100.0	종합체육시설업	299	0.45%
체육도장*	16,126	24.19%	인공암벽장업	328	0.49%
당구장	15,477	23.22%	승마장업	122	0.18%
체력단련장	14,976	22.47%	썰매장업	115	0.17%
골프연습장	8,573	12.86%	무도장업	65	0.10%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골프, 야구)	6,201	9.30%	빙상장업	49	0.07%
체육교습업**	2,874	4.31%	야구장업	38	0.06%
수영장업	891	1.34%	요트장업	17	0.03%
무도학원업	500	0.75%	카누장업	5	0.01%

* 체육도장 :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 교습업 :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교습행위 제공업)

○ 체육시설업 연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등록업	신고업	계
제4106호 1989.3.31.	9종	40종	49종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경륜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레슬링·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육체미·우슈·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원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십팔반무예), 볼링장업, 정구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체력단련장업, 미용제조장업, 당구장업	
제4719호 1994.1.7.	9종	16종	25종
	*경륜장업, 합기도·육체미·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원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십팔반무예, 정구장업, 미용제조장업 제외 **자동차경주장업, 테니스장업, 썰매장업, 에어로빅장업 추가		
제5636호 1999. 1.18.	9종	14종	23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제외		
제7629호 2005. 7.29.	3종	22종	25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추가		
제7913호 2006. 3.24.	3종	19종	22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제외		
제15767호 2018. 9.18.	3종	22종	25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합기도 추가		
제17267호 2020. 5.19.	3종	23종	26종
	*체육교습업 추가		
제17391호 2020. 12.8.	3종	24종	27종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인공암벽장업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보험가입 및 소규모 체육시설업 연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보험가입 및 예외조항 연혁	소규모체육시설 규정 연혁	시행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u>체육교습업</u>	21.6.9. (현행)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u>가상체험 체육시설업</u>	20.1.31.
08.2.29. (현행)	법 제26조(보험 가입) ○보험가입 의무(본문): 체육시설업자 ○ <u>보험가입 예외(단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u>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 단련장업 및 당구장업 (* <u>볼링장·테니스장·에어로빅장 삭제</u>)	08.3.6.
07.4.11.	법 제26조(보험 가입) ○보험가입 의무(본문): 체육시설업자 ○ <u>보험가입 예외(단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u>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체육도장업 · 볼링장업 · 테니스장업 · 골프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에어로빅장업 및 당구장업 (* <u>탁구장·롤러장 삭제</u>)	00.3.28.
99.4.19.	법 제29조(보험가입) ○보험가입 의무(본문): 체육시설업자 ○ <u>보험가입 예외(단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u>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체육도장업 · 볼링장업 · <u>테니스장업</u> · 골프연습장업 · 탁구장업 · 롤러스케이트장업 · 체력단련장업 · <u>에어로빅장업</u> 및 당구장업	94.6.17.
93.3.6.	법 제17조(보험가입) ○보험가입 의무(본문): 체육시설업자 ○ <u>보험가입 예외(단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u>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볼링장업 · 정구장업 · 탁구장업 · 롤러스케이트장업 · 미용체조장업 · 당구장업 · <u>체력단련장업 · 체육도장업 및 골프연습장업</u>	91.6.19.
89.7.1	법 제17조(보험가입) ○보험가입 의무(본문): 체육시설업자 ○ <u>보험가입 예외(단서): 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u>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볼링장업 · 정구장업 · 탁구장업 · 롤러스케이트장업 · 미용체조장업 및 당구장업	89.7.12.

○ 체육시설업 규제 관련 근거 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 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2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제3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